

군포도시공사 제6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1년 11월 12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81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.

제18조(전보제한)

제1항 제5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5. 팀장 이상 보직자(직무대행 포함)

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
③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다.

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② 공사 시설안전 및 중대재해 등의 안전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2년간 전보될 수 없다.

제25조(승진순위)

제2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
② 승진후보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, 경력평정, 상관관리제, 교육마일리지(훈련성적평정), 다면평가, 가점(포상) 등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25조 제2항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성 용 현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황 기 성 (390-7615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18조(전보제한)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.</p> <p>1. 승진 또는 강임된 자 2.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.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당해 직원의 전보 4. 징계처분을 받은 자 5. <신설></p> <p>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다.</p> <p>③ <신설></p> <p>제25조(승진순위) ① <생략></p> <p>② 승진후보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, 경력평정, 성과관리제, <u>가점(교육마일리지, 포상) 등에 의한다.</u></p> <p>③ <생략></p>	<p>제18조(전보제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2. ----- 3. ----- ----- 4. ----- 5. <u>팀장 이상 보직자(직무대행 포함)<신설></u></p> <p><신설></p> <p>② <u>공사 시설안전 및 중대재해 등의 안전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2년간 전보될 수 없다.</u></p> <p>③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다.</p> <p>제25조(승진순위) 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승진후보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, 경력평정, 성과관리제, <u>교육마일리지(훈련성적평정), 다면평가, 가점(포상) 등에 의한다.</u></p> <p>③ <현행과 같음></p>	